

2025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2025. 3. 17.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5. 3. 17.(월), 11:00
2. 장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 I
3. 구분 : 정례 비정례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9명	오혁수, 김동련, 김세환, 오영탁, 최승호, 고찬영, 이상수, 유진호, 김현아
불참인원	4명	김기동, 한송이, 강부근, 나정흠

4. 회의 안건 및 결과

회의 안건	결과
1. 2026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원안의결
2.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	원안의결
3. 회의록 간서명 추천에 대한 사항	원안의결

5. 개회 선언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 내용

▣ 제1호 안건. 2026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2026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이상수 의원이 2026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에 대하여 설명함.

안건 주요 사항	
1. 조정(안) 총괄 현황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후 교무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내용
대학 정원	신입생 정원 1,050명 유지
2026학년도 모집중지/통폐합/신설 학과	해당사항 없음
학과 정원 조정	정원감축: 4개 학과 ▶ 사회복지학과(-20) / 반려동물과(-10) / 뷰티디자인과(-15) / 경호무도학과(-5) 정원확대: 1개 학과 ▶ 스포츠지도과(+50)
전공분리 학과	1개 학과 ▶ 스포츠지도과 - 스포츠지도전공/무도전공/예술전공

〈간서명〉	유진호	최승호	김동련
-------	-----	-----	-----

학과명 변경	산업장비운용학과 ▶ “스마트기계과” 로 변경 바이오생명과학과 ▶ “바이오식품학과” 로 변경
--------	---

2. 2026학년도 학과구조개혁에 따른 계열별 현황

계열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학과수	정원(명)	학과수	정원(명)	증감(2025학년도 대비)
공학	6	185	5	185	0
인문사회	5(전공6)	255	5	235	-20
자연과학	5	275	5	265	-10
예체능	7	335	7	365	+30
계	23	1,050	22	1,050	0

3. 대학평의위원회 2026학년도 학과 구조개혁 심의(안) 현황 - 교무위원회 구조개혁 확정(안)

계열	2025학년도 학과명	학 계	2025 정원	2025 등록인원	2025 충원율	2026 희망	2026 정원	조정내용
공학	전기과	2	35	34(외:12)	97.1%	35	35	변동사항 없음
	소방안전관리과	2	35	24	68.6%	35	35	변동사항 없음
	산업장비운용학과	2	40	29(외:22)	72.5%	35	40	학과명 변경: “스마트기계과” 로 변경
	건축인테리어과	3	35	34(외:16)	97.1%	35	35	변동사항 없음
	컴퓨터정보학과	2	40	38(외:19)	95%	40	40	변동사항 없음
인문사회	경영학과	2	60	58(외:35)	96.7%	40	60	변동사항 없음
	사회복지학과	2	60	30	50%	60	40	정원감축 20명
	경호경찰행정학과	2	60	60	100%	60	60	변동사항 없음
	아동보육과	2	35	16(외:2)	45.7%	35	35	변동사항 없음
	부동산학과	2	40	40	100%	40	40	변동사항 없음
자연과학	호텔조리과	2	60	54(외:24)	90%	60	60	변동사항 없음
	호텔제과제빵과	2	70	54(외:20)	77.1%	70	70	변동사항 없음
	반려동물과	2	80	68	85%	70	70	정원감축 10명
	반려동물보건과	2	30	27	90%	30	30	변동사항 없음
	바이오생명과학과	2	35	24	68.6%	35	35	학과명 변경: “바이오식품학과” 로 변경
예체능	영상콘텐츠과	2	40	38(외:10)	95%	40	40	변동사항 없음
	웹툰출판미디어과	2	40	35	87.5%	40	40	변동사항 없음
	스포츠지도과	2	40	40	100%	80	90	정원확대 50명 전공분과 스포츠지도전공무도전공예술전공
	뷰티디자인과	2	105	88(외:16)	83.8%	90	90	정원감축 15명
	실용음악과	2	40	40	100%	40	40	변동사항 없음
	뉴케이팝학과	3	30	15	50%	30	30	변동사항 없음
	경호무도학과	2	40	36(외:1)	90%	40	35	정원감축 5명
총계			1,050	84% (882/1,050) (외:177)		1,040	1,050	

● 2026학년도 통폐합 / 모집증지 학과 해당사항 없음

<간서명>	유진호	최부영	김동권
-------	-----	-----	-----

- 2027학년도 학과구조개혁 기본 방향 설정

① 26학년도 모집중지 학과 미선정 - 3년 이상 충원을 기준 미충족 학과에 “26학년도에도 신입생 미충족이 될 경우 2027학년도 모집중지 가능” 하다는 경고장 발송

- 김동련 부의장이 스포츠지도과의 경우 전공을 분리하면서 무도전공을 새로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이 현재 경호무도학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임.
- 이상수 의원이 그 부분은 스포츠지도과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경호무도학과와 스포츠지도과의 무도전공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김동련 부의장이 명칭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지원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상수 의원이 현재 우리대학의 경영학과와 뷰티디자인과처럼 학생들의 전공을 분리하여 수업하는 것처럼, 스포츠지도과는 전공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닌 모집된 정원을 전공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오영탁 의원이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과 통폐합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학과의 통폐합을 진행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함.
- 이상수 의원이 현재 우리대학의 구조개혁 규정에 따르면 학과 통폐합 선정 기준 중 신입생 충원을 80%미만, 정원이 35명 이하인 학과는 90%미만 학과를 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신입생 충원 결과에 따르면 절반의 학과를 통폐합하는 상황이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함.
- 오영탁 의원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거해서 조치가 진행된다고 생각함.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자가 누군가에 따라 80%가 70%가 되기도 하고 60%가 되기도 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음.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해당 기준이 변경되거나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제시가 되어야함. 올해는 이렇게 적용하고 내년에는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 규정을 만들어서 대학평의원회이든 교무위원회나 교무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함.
- 이상수 의원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탁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회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 오영탁 의원이 26학년도에도 신입생이 미충족될 경우 27학년도 모집중지 가능하다는 경고장 발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의 명칭 변경을 요청함. 경고는 일종의 징계인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까지 날린다는 것은 구성원한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때문에 경고장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간서명>

유건호

최희봉

김동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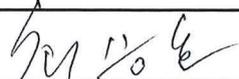
이 좋겠다고 제안함.

- **고찬영 의원**이 사실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임. 경고장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대로 규정에 명시된 대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 명칭을 바꿔 사실 확인서를 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신입생 충원율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대학의 인트라넷에 공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보이지 않음.
- **최승호 의원**이 인트라넷에 해당 내용을 규정과 같이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함.
- **김동련 부의장**이 경고장 발송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알림장 정도로 끝내는 것이 적절해 보임. 또한 사실 통보도 실질적으로 경고성 사실 통보임. 제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모집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고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과에만 보내야지 인트라넷에 공개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신입생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음.
- **오영탁 의원**이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은 행정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경고장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한 것으로 답변함.
- **오혁수 의장**이 이전 구조개혁을 진행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 중 통폐합 대상 학과에게 1년 전에 경고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음. 3년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경고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했으나, 그 표현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요청함.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심의함.

▣ 제2호 안건. 대학평의회회 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회회 규정 개정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나가람 담당**이 대학평의회회 규정 개정에 대하여 설명함.

안전 주요 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제10조 (회의록)	① 평의회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 평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③ <u>평의회 의장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u>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에는 출석 평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u>회의록이 2매 이상일 때는 1매 이후부터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이 간서명토록 하고</u>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③ <u>평의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u>

<간서명>			
-------	---	--	---

	<p>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을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④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p>
--	----------------------	---

- **고찬영** 의원이 규정 개정 시, 주체인 기획처에서 비공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인지 질의함.
- **나가람** 담당이 현재 평의원회 회의록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평의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한다고 답변함.
- **오영탁** 의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청구권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함.
- **나가람** 담당이 개정(안)에서 3항의 1~3호가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함.
-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 제3호 안건. 회의록 간서명 추천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금회 대학평의원회 간서명은 김동련 부의장, 최승호 의원, 유진호 의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각 평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함.

의원 전원이 동의함.

- **오혁수** 의장이 2025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는 김동련 부의장, 최승호 의원, 유진호 의원으로 결정함.

<p><간서명></p>	<p><i>유진호</i></p>	<p><i>최승호</i></p>	<p><i>김동련</i></p>
--------------------	-------------------	-------------------	-------------------

▣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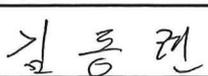
- **오영탁** 의원이 대학평의회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학에 설치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며, 평의회의 주된 역할은 총장과 이사회 등 학교의 경제와 경영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대학에서 상정한 안전에 대해서 교수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 등 평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을 만들어 온 부서가 기획처이고 기획처 소속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이는 마치 선수 본인이 심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학교의 결정을 견제하고 심의하는 것이 대학평의회의 목적인데 이 안전을 상정한 부처에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판단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래서 교수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등 평의원들인 평의회에 참석하면서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다음에 견제하고 또 조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함. 추가적으로 “다른 대학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으며, 잘못된 시스템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힘. 우리 학교의 정말 많은 문제들을 평의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학교가 또는 일부 보직들이 또는 총장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걸 바꾸려고 평의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수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함.
- **고찬영** 의원이 안전을 상정하는 부서의 장이 평의회에 배석하여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오영탁** 의원이 고찬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각 부서의 장이 오던가 다른 실무자가 배석하여 설명해야지, 안전을 상정한 부서에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함.
- **오혁수** 의장이 구조 개선에 대한 좋은 의견에 감사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함.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평의회의 결과로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함.
- **고찬영** 의원이 안전에 대해 각 부서의 장들이 설명하면, 오영탁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함.
- **김동련** 부의장이 해당 안전을 상정한 부서의 의원들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밝힘. 이상수 의원님이 안전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했지만, 해당 안전의 담당자는 심의권이 없으면 된다고 판단됨.
- **오영탁** 의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회는 학교의 여러 중요 사항을 심의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함. 학생 대표는 학생들이, 직원 대표는 직원들이 자체로 선발하면 됨. 교수 대표는 보직을 제외한 교무회의나 노조 대표들이 협의하는 것이 심의가 투명해지고 이런 기이한 상황도 안 벌어진다고 봄.

<간서명>	유권호	최영호	김동련
-------	-----	-----	-----

- **김동련 부의장**이 안전 상정 부서와 의원의 소속이 동일한 경우, 그 안전에 대한 심의 권한만 배제하면 되지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오영탁 의원**이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고하는 사람은 보고하고 심의하는 사람은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김동련 부의장**이 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주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안전 상정 부서의 소속 의원의 심의 권한만 배제하면 되지 처음부터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오영탁 의원**이 김동련 의원의 의견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됨. 안전 상정 부서의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그렇지만 우리가 노사 협상해봐서 아시겠지만 보직들은 사측인가요? 노측인가요? 보직들은 사측으로 봄. 그것과 똑같다고 판단됨.
- **이상수 의원**이 안전 설명은 기획처 팀장으로서 진행했으며, 이후 논의는 의원으로서 참여했다고 답변함. 대학 구조개혁의 대해서는 평의원의 관점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함.
- **오영탁 의원**이 기획팀장이 설명한 안전에 대해서 기획팀장에게 질의했다고 답변함.
- **이상수 의원**이 기획팀장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평의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의원님의 의견대로라면 회차별로 평의원의 구성원이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담당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와서 설명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오영탁 의원**이 김동련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해당 안전을 상정한 부서의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
- **고찬영 의원**이 담당자가 안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평의원회 의원으로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됨.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 보고를 해당 부서의 장이 와서 설명하면 담당자가 의원으로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그 정도로 개선을 하고 추후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오영탁 의원**이 어차피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은데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게 아니라고 답변함.
-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원회의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 향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정리함. 그러나 학교 위원회의 현실적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며 의장으로서 평의원회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개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마무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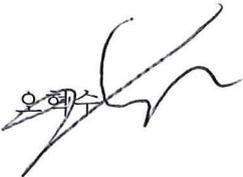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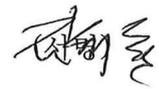
7. 폐회선언 :

이상 안전을 심의 종료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	---	---	---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의장	 오혜수 (서명)		
의원	김동련  (서명)	김세환 	
	오영탁  (서명)	최승호 	
	김기동 (서명)	고찬영  (서명)	
	이상수  (서명)	한송이 (서명)	
	강부근 (서명)	유진호 	
	나정흠 (서명)	김현아 	

<간서명>			
-------	---	--	---